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74,547,797	26,236,434
일반회계	813,489,567	24,404,687
특별회계	61,058,230	1,831,747
공기업특별회계	56,001,597	1,680,04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520,658	1,095,62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480,939	584,428
기타특별회계	5,056,633	151,699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224,148	66,724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502,740	75,08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9,745	9,89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 재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75,24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다.